

제28조 (계약해지)

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수급자가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.

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

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29조 (이용료 비용의 변경)

① 서비스 수가는 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

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.

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

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.

제30조 (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- *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*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*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
- *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